

#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## 검 토 보 고

### I. 주요내용

- 병역에 관한 신고·출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병역의무자가 직접 신고·출원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등이 대리신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의2 신설).
-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이 군병원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함(안 제57조제3항).
- 고등학교 이상 학교의 장,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소속 학생·공무원·임직원이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에 소집된 기간을 결석·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함(안 제74조의3·제74조의4)
-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이후에도 질병 등의 치료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년의 기간 동안 병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,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7조의4제5항·제6항)

## II. 검토의견

- 개정안 제77조의4제6항에 따른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진료기록을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하기 위하여는 「의료법」 제21조제3항<sup>1)</sup> 또한 함께 개정되어야 하는데, 이에 대한 관련 법률안<sup>2)</sup>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개정안의 체계·자구 심사시 관련 법률안의 심의경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- 그 밖에 체계·자구를 검토한 결과, 법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김 성 완)

- 
- 1) 「의료법」 제21조(기록 열람 등)① 환자는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(추가기재·수정된 경우 추가기재·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·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
- ②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사·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~ 9. (생략)
10. 「병역법」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·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
- 2) 「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2202256, 강대식의원 대표발의)